

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1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공고방법 :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
2.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내역
 - 상호명 : 비전기업
 - 대표자 : 김*덕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6 8층
 - 처분업종 : 실내건축공사업(등록번호 : 노원-23-나-10)
 - 위반내용 :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자본금)
 - 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83제3호
 - 위반내용(상세): 건설업 실태조사 자본금 부족 확인
 - 영업정지기간(변경 전) : 2026년 5월 11일 ~ 2026년 10월 10일
 - 영업정지기간(변경 후) : 2026년 5월 11일 ~ 2026년 9월 25일
 - 변경사유 : 건설업 교육 감경(15일)